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신기술(NET) 인증제 안내자료

2026. 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목 차 ■

I.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

1.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개요	----- 1
2. KRC신기술등록제와의 공동인증제	----- 3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4
4. 심사절차 및 방법	----- 5
5. 예정기술 공고	----- 6
6. 신기술인증서 발급 및 관리	----- 7
7. 심사 수수료	----- 7

II. 신기술인증 관련 법령

신기술인증 관련 법령	----- 23
-------------	----------

1.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

1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개요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이란?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 목적 및 근거

- (목적)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 (근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신기술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등

□ 신청 자격 : 기업, 농산업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 신청 대상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 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의 편성, 인증신기술 고시 및 인증서 발급 · 인증신기술 연계지원제도 수립 및 운영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	· 신기술인증제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 인증제도 운영·관리 · 인증신기술 실적관리 및 적용제품 품질평가 등 사후관리

□ 인증 기준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국가기술력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품질경영체계 구축여부 및 신기술인증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큰 기술

□ 인증 기술분야 <참고 1>

대분류	중분류
1. 농업 기술 (4개)	1-1 유전자원육종
	1-2 재배·생산
	1-3 유통·관리
	1-4 생명공학
2. 축산·수의 기술 (3개)	2-1 종축·생산
	2-2 유통·관리
	2-3 동물질병·수의약품
3. 식품 기술 (3개)	3-1 식품가공·제조
	3-2 기능성·영양
	3-3 위생·안전
4. 임업 기술 (2개)	4-1 임산물 재배·생산
	4-2 임산물 가공·유통
5. 농림식품 기반기술 (3개)	5-1 토목·시설·환경
	5-2 농자재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6. 농림식품 융복합 (3개)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6-3 농생명 정보·전자

□ 인증 혜택<참고 2>

-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 혜택(신청시 가점 3점 부여)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혁신제품 지정 추천
- 농식품벤처육성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우대

2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와 KRC신기술등록제의 공동인증제

□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와 농어촌공사 KRC신기술 등록제의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인증

- (추진내용) 농림식품신기술에 대해서 KRC신기술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KRC신기술로 등록되어 현장에서 활용
- (추진절차) 신기술인증 공고 시 KRC신기술 등록 동시 신청 → 사전 검토·심사 추진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확정공고 후 KRC신기술 등록
- (대상분야) 토목·시설·환경 분야 등 농어촌공사 현장활용 기술분야
- (신청방법)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신기술 신청화면에서 KRC신기술 등록 신청 항목 선택
- (제출자료)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직전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KRC 건설공사 적용 현장분석, 활용가능 분야 및 활용 전망)<상세내용은 4페이지 참고>

*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사업과의 부합성 및 활용가능성,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시공방법 소요기간 등 적정성, 목적물의 유지관리 비용 등 시설물관리의 용이성 등 내용 포함

- KRC신기술등록 제도 -

- 사업소개 :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KRC 신기술로 선정·관리하며, 등록신기술은 전국 농어촌공사 사업현장에서 우선 적용 하도록 홍보하고 촉진하는 제도
- 사업 분야 : 정부인증 신기술 및 한국농어촌공사 성과공유제개발기술
 - * 콘크리트 보수보강, 사면관리 및 보강, 수문, 수질관리 및 개선 등 26개 분야
- 등록 혜택
 - KRC신기술관리시스템 등록되어 농어촌공사 기술이용자 홍보
 - 전국의 농어촌공사 사업현장에서 유사기술보다 우선 기술적용 검토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화면 오른쪽 메뉴(03 기술인증) 클릭 → 접수 및 평가 진행 현황 클릭
 → 신기술 신청 클릭 → 기본 정보 및 관련 자료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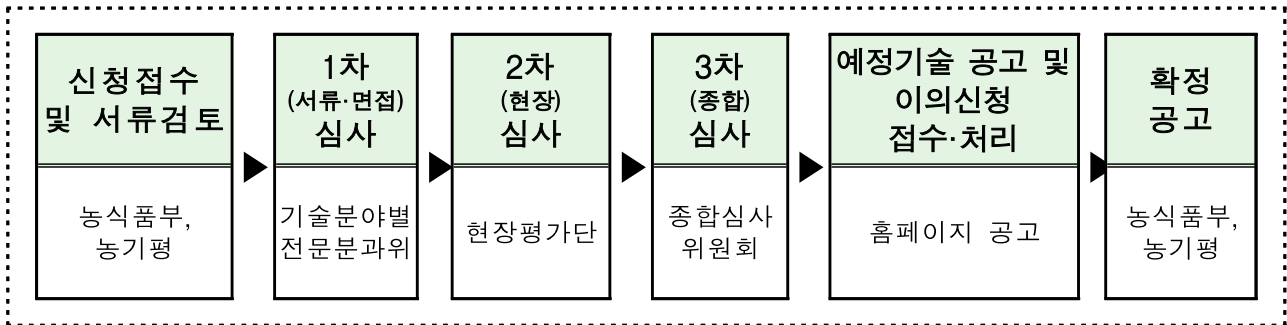
* 기존 FRIS 회원의 경우 FRIS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신규 가입자의 경우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제출 서류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 ④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 시 제출) ⑤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⑥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⑦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	해당서류 보유 시 증빙자료 제출
KRC 공동인증제 신청 시	⑧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직전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일 것, 기업신용 평가등급이 B- 이상 일 것, 부도 상태에 있지 않을 것,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 ⑨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KRC 건설공사 적용현장 분석, 활용 가능 분야 및 활용 전망)	해당자료 필수 제출
참고사항	○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 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심사절차 및 방법



□ 1차(서류·면접) 심사 : 전문분과위원회(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 심사내용 :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 경영성 평가<참고4>
- 심사방법 : 제출 서류 및 신청인 면접(발표)을 통해 심사 진행
- 통과기준 :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통과

□ 2차(현장) 심사 : 전문분과위원회(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5인 이상)

- 심사내용 : 1차 심사결과 확인,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제 등 현장 적용성 평가
- 심사방법 : 신기술 적용 현장(공장, 연구소 등)에서 평가를 실시
- 통과기준 : 현장평가단 3/4이상의 찬성할 경우 통과

□ 3차(종합) 심사 : 종합심사위원회(대분류 기술분야 전문가 15인 내외)

- 심사내용 : 1·2차 심사의 적절성 및 심사결과에 대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 등을 심사
- 심사방법 : 신청기업과 해당 심사를 담당한 분과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심사 진행
- 통과기준 : 출석위원 2/3이상 동의를 통해 예정기술로 선정

5

예정기술 공고(이의신청 처리)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 심사 절차를 통해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된 신청기술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 후 의견수렴

- 공고방법 :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간 공고
- 공고내용 : 기술명, 기술보유자, 유효기간, 예정기술의 주요내용*

* 인증 예정기술 공고 시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미공개 가능

□ 예정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 공고된 예정기술의 신기술 인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 이의신청 기간 : 인증 예정기술 공고 기간 3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 접수
 - 이의신청 서류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 이의신청 처리

○ 처리절차

- 이의신청 접수 ▶ 기술인증 신청인에게 이의사항 통보(7일) ▶ 신기술 인증 신청인 답변서 제출(7일) ▶ 전문분과위 의견 청취 및 심사(60일 기한, 필요시 연장 가능) ▶ 심사결과 통보(장관 →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 처리방법

- 이의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신규로 구성, 이의신청 사항 및 신기술인증 신청인의 답변서를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확정
- 필요한 경우 1·2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장 및 이해관계자를 분과위에 참석시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 청취
- 이의신청 수용 예정기술 : 취소기술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

6

신기술인증서 발급 및 관리

□ 농림식품신기술로 최종 확정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서 발급

- 기술명, 기관명, 대표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장관이 발급, 인증신기술은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고
- 신기술 인증의 표시 : 인증신기술 적용제품 및 홍보물에 사용 가능

※ 농림식품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신청한 기술을 심사 추진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9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u>신기술 인증 표시(NET 마크)</u>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의 표시 사용

□ 인증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 인증신기술 상용화 실적 및 인증표시(NET마크) 사용 실적조사
 - 인증 이후 후속연구, 제품화 추진 등 상용화 추진실적 및 인증표시 사용실적 조사를 통해 인증신기술 활용도 제고 및 성과분석 실시
- 신기술 보유기관 현장조사 및 적용제품 품질조사 추진
 - 상용화 추진 실적미흡 기관 실태조사 및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품질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 등 제재조치 가능

7

심사 수수료

□ 1차(서류·면접) 심사 : 20만원

□ 2차(현장) 심사 : 50만원

□ 3차(종합) 심사: 20만원

※ 심사비 납부는 심사대상으로 확정 시 개별통보/ 계좌이체로 납부

참고 1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기술분야별 세부기술

◆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중분류 (전문위 구성 기준)	
1. 농업 기술 (4개)	1-1 유전자원·육종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1-2 재배·생산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1-3 유통·관리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1-4 생명공학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 기술 등
2. 축산·수의 기술 (3개)	2-1 종축·생산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2-2 유통·관리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2-3 동물질병·수의약품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3. 식품 기술 (3개)	3-1 식품가공·제조	식품 화학, 식품 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3-2 기능성·영양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3-3 위생·안전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4. 임업 기술 (2개) * 목재 생산 가공 관련 기술 제외	4-1 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등
	4-2 임산물 가공·유통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등
5. 농림식품 기반기술 (3개) * 신기술 농업기계 제외	5-1 토목·시설·환경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조성·보전 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5-2 농자재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등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 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6. 농림식품 융복합 (3개)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 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기술 등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등
	6-3 농생명 정보·전자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통·유통 정보화 기술, 생물 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 6개 기술	중분류 18개 기술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목재 관련 기술은 산림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진청 별도 시행

참고 2

농림식품신기술인증 혜택(변동 가능 확인 필요)

I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 출연연, 대학, 농산업체 등 ○지원내용 - 농림축산식품 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기타 : 신기술인증(NET) 취득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3점 가점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061-338-9700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창업기업)	○지원대상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창업,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지원금 기업당 3천만원 - 자부담 30% 포함한 지원금, 각종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지원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내지 우편 접수 중 택일 ○기타 : 농식품분야 기술기반(특허등록, 인증 등) 창업기업 가점 부여(최대 3점)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063-919-1433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첨단기술)	○지원대상 -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 첨단기술분야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고도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투자IR 멘토링 등 지원 - 총 사업비 규모 : 90억원, 국고지원금 70% + 자부담 30% ○지원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내지 우편 접수 중 택일 ○기타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 가점 부여(1점)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063-919-1433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식품 쏠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 - 기업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사업화자금은 기 투자 받은 민간투자금과 1:1 매치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온라인 접수 ○기타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투자금 보다 사업화자금을 가감할 수 있음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063-919-1411 063-919-1413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농식품클라우드 펀딩활성화)	○지원대상 - 아이디어 또는 기술력 바탕의 농식품기업 ○지원내용 - 클라우드펀딩을 위한 현장코칭, 맞춤형컨설팅 - 펀딩 성공 시 투자유치수수료 지원(100~300만원 이내) ○지원방법 :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apfs.kr) ○기타 : 기업의 사업현황 또는 펀딩상품 등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02-3771-6796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 경영체 ○지원내용 -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투자대상 선정에 의함(평균 10~20억 투자) ○지원방법 :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apfs.kr) ○기타 : 모태펀드 투자분야(11개) 중 “창업아이디어” 분야의 경우 이노비즈인증, <u>신기술인증(NET)</u>, NEP 취득 농식품경영체 대상 투자 진행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02-3771-6883

II

타 부처 지원(농식품신기술인증업체 대상)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특허·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등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지원방법 : 지역본·지부별 신청 ○기타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digital.kosmes.or.kr)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 사항에서 신청일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기술보증 기금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해당기업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 보증 - 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마케팅 등 ○지원방법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기타 : 중점지원 대상기업(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인증 획득기업 등)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제도 (중소·벤처 기업 부설연구소)	○지원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항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지원내용 - 석·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지원방법 : 전문연구요원(www.rndjm.or.kr) ○기타 : 연구성과 항목에서 신기술·신제품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98- 8371~8377
조달청 지정제도 (우수제품제도)	○지원대상 - 신기술(NET)적용제품 가지고 있는 기업 - 혁신제품 지정받은 기업 ○지원내용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제작·배포 등의 홍보 지원 ○지원방법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shop.g2b.go.kr/link/GEEA004_01/) ○기타 : 신기술(NET)적용제품 가지고 있는 기업은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임	조달청 042-724- 7223,7285, 7233,7144, 7489,7461

참고 3

농림식품신기술인증 관련 서식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전년도)수출액 만\$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 명칭		신청 기술분야 []
	기술핵심단어 [] [] []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심사·평가비용 서류·면접심사: 200,000원 현장심사: 500,000원 종합심사: 200,000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면접 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결과 통보
신청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문분과 위원회		전문분과 위원회		종합심사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술 설명서

(제4쪽 중 제1쪽)

1. 개발기술 핵심내용(기술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며,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가. 핵심 요소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다.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라. 관련 산업 파급효과

2. 기술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연구개발비(참여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 백만원		연구개발 기간 년 월 ~ 년 월		
기술개발 방법(복수응답 가능)				
☐ 자체(단독)개발 ☐ 공동개발 ☐ 위탁개발 ☐ 기술도입 ☐ 기술지도 * 자체개발 외의 방법이 포함된 경우 대상기관(업체)명 및 소요비용 기재 대상기관(업체)명 소요비용 백만원(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금액)				
개발 참여자 총인원				
총 명(자체개발 외의 방법이 포함된 경우 외부참여인원 명)				
핵심개발 참여자				
소속기관(업체)명	직위	성명	참여 분야	비 고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개발과정상 기술도입, 용역도입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본 기술과의 관계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구분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명칭 (등록명칭)	권리자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의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시험일자 (인증일자)	시험기관 (인증기관)	시험내용 (인증내용)	시험결과 (인증결과)

다. 타인의 산업재산권과의 관계(자체개발이 아닌 경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 중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국내외 유사·경쟁 기술과의 특징 비교(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비교항목	자사 신청기술	국내 유사·경쟁기술	선진국 유사·경쟁기술
※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5개 내외 비교	(기술명:) (제품명:)	(기술명:) (제품명:)	(기술명:) (제품명:)
기술개발 완료시기	년 월	년 월	년 월
판매개시 예정일	년 월	년 월	년 월

5.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개요(※ 해당되는 경우 적습니다)

가. 제품의 사진, 개략도 또는 구성도

나. 제품의 용도

다. 제품의 성능(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라. 예상 시장규모

구 분	전년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
국내(단위: 억원)			
해외(단위: 미화 백만달러)			

* 소재, 부품 등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제품과 용도가 같은 품목의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산출

참고 4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심사서(양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서류·면접 심사·평가의견서(1차심사)

과제 번호 :

기 술 명		
적 용 제 품 명		
기 술 성 평 가 (100)	기 술 성 (20)	☐ 세계적인 선진기술에 해당함 (20) ☐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7) ☐ 국내의 우수한 기술에 해당함 (14) ☐ 국내의 유사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1) ☐ 국내의 유사기술보다 미흡함 (8)
	적 용 성 (20)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시킨 핵심기술임 (20)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시킨 핵심기술임 (17) ☐ 적용제품의 일부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4) ☐ 적용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1) ☐ 적용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기술임 (8)
	재 현 성 (20)	☐ 추가개발 없이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기술임 (20) ☐ 기술의 완성도는 약간 부족하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임 (17) ☐ 기술적 완성도는 부족하나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14) ☐ 기술의 완성도가 부족하여 기술적 보완이 있어야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11) ☐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며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성도 희박함 (8)
	발 전 성 (20)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한 기술임 (20)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7) ☐ 향후 제한적이거나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임 (14) ☐ 향후 제한적이거나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1) ☐ 대체기술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임 (8)
	파 급 성 (20)	☐ 핵심기술로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큰 기술임 (20) ☐ 전문기술로 해당 산업부분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7) ☐ 전문기술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기술임 (14) ☐ 단순개량기술로 적용제품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기술임 (11) ☐ 아이디어기술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임 (8)
경 제 성 평 가 (50)	기존제품대비 성 능비교(20)	() () () () () 매우우수(20) (17) (14) (11) 미흡(8)
	생산/가격 경쟁력(20)	() () () () () 매우우수(20) (17) (14) (11) 미흡(8)
	시장규모(10)	☐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10) ☐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7) ☐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5)
경 영 성 평 가 (50)	기술개발력(15)	☐ 상등급 (15) ☐ 중등급 (10) ☐ 하등급 (5)
	품질경영체계(10)	☐ 상등급 (10) ☐ 중등급 (7) ☐ 하등급 (5)
	지원효과등(15)	☐ 상등급 (15) ☐ 중등급 (10) ☐ 하등급 (5)
	지속가능경영(10)	☐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도 매우 높음 (10) ☐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도 높음 (7.5) ☐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도 보통 (5) ☐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도 낮음 (2.5) ☐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도 매우 낮음 (0)
추 가 확 인 사 항	현장확인 필요여부	☐ 필요 ☐ 필요치 않음 *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현장 또는 시제품 등 추가확인 필요성 등 고려
	추가제출 필요자료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 기타:

심사위원 : _____ (서명)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평가의견서(1차심사)

과제번호 :

기 술 명							
적 용 제 품 명							
평가 항목		4년	3년	2년	1년	기타	판 정
정량적 항목	1차심사 평점	85점 이상	80~85점 미만	75~80점 미만	70~75점 미만	추가 인정 사유 및 기간	년
	신청기술의 국내·외 특허 실적	등록 2건 이상	등록 1건 이상	출원 1건 이상	실적 없음	추가 인정 사유 및 기간	년
정성적 항목	국내·외 기술수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추가 인정 사유 및 기간	년
	국내·외 시장규모	신규 및 수출시장	국내시장 형성	일부 시장형성	시장형성 없음	추가 인정 사유 및 기간	년
유효기간 산정		_____년 (평점 _____년 + 특허 _____년 + 기술수준 _____년 + 시장규모 _____년)/4					
인증 유효기간 평가 의견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현장·확인 평가의견서(2차심사)

과제번호 :

(변경)기술명	
적용제품명	
심사결과 ☐ 3차심사 상정 ☐ 보류 ☐ 2차심사 탈락	
평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기술평가
	시제품 평가
	품질경영 체계
	지원효과 및 필요성
인증 유효기간 ☐ 1년 ☐ 2년 ☐ 3년 ☐ 기타()	
유효기간 평가의견 (1차 심사결과 조정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종합심사 의견서(3차심사)

과제 번호	기 술 명	인증기간	적절성	적합성	선정여부(○,×)
신청기술에 대한 신기술 미선정 사유					
과제 번호	미선정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종합심사위원장	_____ (서명)	



II. 신기술인증 관련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2456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2456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 6. 27.>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

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3.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 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2017. 6. 27., 2019. 4. 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본조신설 2013. 12. 1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2456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2., 2017. 6. 28., 2020. 2. 28.>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2., 2017. 6. 28.>
-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6. 28.>

[전문개정 2014. 5. 2.]

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서 그 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6. 28.>

[본조신설 2014. 5. 2.]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2., 2017. 6. 28.>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④ 삭제 <2016. 12. 12.>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12., 2017. 6. 28.>

[본조신설 2014. 5. 2.]

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평가 비용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5. 2.]

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은 인증 유효기간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본조신설 2014. 5. 2.]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시행 2022. 4. 2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41호, 2022. 4. 2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제3조(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접수) ① 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농림 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및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제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제2항의 공고된 접수기간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적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평가원장에게 상시 신청할 수 있다.

④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평가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는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신기술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일정 등 심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원장은 심사일정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평가원장은 단일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운 융복합기술 등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술과 가장 관계있는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외부전문가를 전문분과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 평가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 및 인증 심사·평가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평가원장은 신기술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⑦ 평가원장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 또는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신기술 인증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1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 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4분의3 이상 출석시 실시하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 산정하여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 ④ 1차심사결과 2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⑤ 1차심사 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부여는 별지 제1호 붙임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 유효기간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등록 실적
- 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제6조(2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② 2차심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한다.

③ 2차심사는 1차심사를 담당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장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 5인 이상으로 현장평가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로 현장평가심사단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후보단에서 추가구성하여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2차심사는 현장평가심사단의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3 이상이 동의한 기술을 3차심사에 상정한다.

⑤ 2차심사 시 인증 유효기간은 1차심사 결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의 적정성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여한다. 단, 1차심사 시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과 상이한 경우 현장평가심사단의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사유 및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3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2차심사의 적절성 및 심사결과가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하고 제6조제4항에 따라 3차심사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단, 전문분과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분과위원장은 1·2차 심사에 참여한 분과위원 중에 1인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⑤ 종합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8조(인증 신청 기술의 재심사·평가) ① 평가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2차심사·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평가심사단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류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류 판정 통보일 기준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추가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 인증 예정기술공고) ① 평가원장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및 인증 심사·평가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의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시행령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인증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인증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이의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이의신청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해당기술의 인증 심사·평가를 담당할 전문분과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 및 인증 심사·평가를 담당할 전문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1·2차 심사에 참여한 분과위원 1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 처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원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이의신청 처리 후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은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해당 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 사항이 수용된 예정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취소하고 인증예정 취소기술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한다.

제11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의 기준에 따라 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출석한 심사위원 4분의3 이상이 '적합'으로 동의한 기술을 연장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연장기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평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는 해당기술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적합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